『성북구 - 3개아파트 - ㈜워터팜』
물 공유 아파트 시범 사업을 위한 업무협약서(안)

서울특별시 성북구와 석관두산아파트·돈암삼성아파트·래미안월곡아파트단지(이하 '아파트'라 한다), ㈜워터팜은 물 공유 아파트 시범사업 추진을 위하여 다음과 같이 협약을 체결한다.

제1조(목　　적) 이 협약은 성북구와 아파트, ㈜워터팜의 상호 협력을 통해 평소 필요 이상으로 사용되는 물을 줄여, 상수도 시설의 부재로 물 사용에 불편을 겪고 있는 국내 초·중·고등학교와 물을 나눔으로써 물 부족과 낭비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물 공유 아파트 시범사업을 성공적으로 추진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.

제2조(기본원칙) 이 협약서에 명기된 사항은 모든 기관이 상호 신의와 성실의 원칙에 입각하여 준수한다.

제3조(협력분야) ① 성북구와 '아파트', ㈜워터팜은 다음과 같이 상호 협력하고, 이를 더욱 발전시키도록 노력한다.

1. 성북구와 '아파트', ㈜워터팜은 필요 이상으로 낭비되는 물을 줄이기 위한 상호간의 정보제공과 실행수단을 마련하는데 상호 협력한다.
2. '아파트'는 ㈜워터팜이 물 공유 서비스를 진행하는데 필요한 수도 사용량, 가구 구성원 수 등의 정보를 제공하고, 주민 대상 홍보, 서비스 제공 과정에 필요한 행정적 지원을 우선적으로 추진한다.
3. 성북구는 ㈜워터팜이 '아파트'에 물 공유 서비스를 효과적으로 제공할 수 있도록 행정적 지원을 우선적으로 추진한다.
4. ㈜워터팜은 '아파트'가 성공적으로 물을 공유할 수 있도록 합리적인 물 사용을 위한 교육·홍보 등의 서비스를 제공하고, 상수도 시설 부재로 물 사용에 불편을 겪고 있는 국내 초·중·고등학교의 물 문제 해결을 위해 최선을 다한다.

② 기타 운영에 관한 사항은 상호간의 충분한 협의를 거친 후 추진한다.

제4조(협약서의 효력 및 유효기간)

1. 본 협약서의 효력은 협약 당사자가 서명한 날로부터 발생하며, 유효기간은 2016년 12월 31일까지로 한다.
2. 본 협약은 유효기간 만료 60일 이내에 어느 일방으로부터 별도의 서면으로 된 해지 의사표시가 없는 한 자동으로 1년씩 그 효력을 연장한다.

제5조(협약서의 변경) 본 협약서 내용을 추가 또는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협약기관간의 협의를 통해 변경할 수 있다.

제6조(기　　타) 이 협약이 체결되었음을 증명하기 위하여 협약서 5부를 작성하고 상호 서명한 후 각 기관이 각 1부씩 보관한다.

2016년　3월　22일

성 북 구 청 장

㈜워터팜 대표

석관두산아파트 입주자대표

돈암삼성아파트 입주자대표

래미안월곡아파트 입주자대표